

국 토 교 통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5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○ 교차로에서 부산○○○○까지 구 ○○○○선로 구간에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‘부산 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 조성사업(1차)’을 2015. 9. 18. ○○종합건설(주)¹⁵³(대표자 ○○○)의 1개사¹⁵⁴와 총 공사부기금액 2,133,967,000원에 도급계약하고 2015. 9. 23. 착공하여 2016. 12. 29. 준공¹⁵⁵하였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

153) 부산광역시 ○○구 ○○면 ○○2길6에 소재

154) 부산광역시 ○○구 ○○로 45번지 102에 있는 ○○○○○(주)(대표자 ○○○)

155) ○○종합건설(주)는 2016. 7. 1. 위 공사 교량철거 공중에 대하여 (주)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와 당해 공종부분을 원도급금액 81,305,983원의 82% 66,671,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(하도급기간 2016. 7. 1.부터 2016. 7. 31.까지)하였음(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0,309원 및 환경보전비 469,504원 포함)

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 및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37호, 2014.10.22.)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(감액조정)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관리비는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국토교통부가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‘부산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 조성사업’ 사업비는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○ 교차로에서 ○○○○○○까지 구 ○○○○○로 구간에 시민휴게공간 조성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해당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도, 2016. 8. 22. 기성검사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(주)○○○○가 ○○종합건설(주)를 통하여 허위의 증빙서류¹⁵⁶⁾를 첨부하여 기성검사를 신청하였으므로 감액하여 기성처리

156) (주)○○○○ ○○○은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집행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계산서가 있다는 사유로 2017. 0. 0. ○○○ 부장이 빈 공간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 위에 글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,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조회 한 결과 (주)○○○○가 2016. 7. 1. 안전용품(1,181,400원)을 구입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(승인번호 20160701-00000000 -00000000) 및 2016. 7. 6. 환경관리를 위한 천막(112,200원)을 구입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(승인번호 20160706-00000000 -00000000)는 발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

하여야 했는데도, 이를 검토·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내용대로 지급하여 국고보조금 648,820원¹⁵⁷⁾ 상당액이 교부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시정] 국고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648,820원 상당액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157) 안전관리비 970,309원 및 환경보전비 112,200원을 포함한 총 1,297,640원(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가치세 포함) 중 국고보조금 비율인 50%에 해당하는 금액